

인천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60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6033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5714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K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장지혜

변론종결 2022. 7. 12.

판결선고 2022. 8. 3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5714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8. 22. 접수 제20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원고인 소송피수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계하고,

종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1. 5. 3. 5,000,000원을, D 주식회사는 2001. 1. 18. 7,300,000원을, E

주식회사는 2002년경 15,100,000원을 B에게 각 대출한 대출채권회사들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3. 31.부터 2003. 9. 30.까지 위 대출채권회사들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아 각 양도양수일 무렵 채무자 B에게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양수인으로서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7차전174호로

위 각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5. 24.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34,097,872원 및 그중 1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의 아버지인 F은 2016. 4. 11.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 G, H, I, J이 망인을 공동상속(피고의 상속지분 3/13,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지분 각 2/13)하였다.

라. 피고 및 B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9. 7.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2021. 4. 15.

제1심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사. B은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1. 5. 31. 인천지방법원 2021하단139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2. 3. 8.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의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소는 단순히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부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고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부인을 선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직접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 또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상 별도로 부인대상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함과 동시에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부인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2/1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B 사이의 위 분할협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부부가 한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식으로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고, 이는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자가 되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공동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그중 1/2 지분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피고와 B 사이의 위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13 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등으로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가 남편인 망인과 함께 거주해 온 집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외에도 총 12,672㎡ 규모의 토지인 같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의 B에 대한 1의 나.항 기재 지급명령상 B의 주소지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동일하고, 위 지급명령 정보를 피고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와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기록상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수 자금의 마련 방법,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전후의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 등 부부공동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김은경, 판사 권비룡

별지